



제276회 정례회
2008. 12. 3

검 토 보 고 서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외 8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8년 11월 28일
- 회부일자 : 2008년 12월 1일

3. 제안 이유

-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 내용

- 가.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해야함(안 제3조)
- 다. 도에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설치(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15명 이내로 구성(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라.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위탁 운영 할 수 있음(안 제12조)
- 마. 도지사는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음(안 제22조)

바. 도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안 제24조),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특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 조례안 : 6장 27조 부칙 2조로 구성

5. 검토 의견

가. 제정 동기

- 동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충청북도의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임.

나. 현행 위원회 운영 실태

- 충청북도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하여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2003.6.2) 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별첨)은 충북과 전남,경남이 조례를 미지정 상태임

다. 검토결과

- 동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는 있지만 충청북도에서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 1부

광역자치단체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현황

시도별	법규명	제정일	공포일	비 고
서울	서울특별시보육조례	1999.05.10	1999.05.10	
부산	부산광역시보육조례	2005.06.08	2005.06.08	
대구	대구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	2005.11.10	2005.11.10	
인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	2005.09.26	2005.09.26	
광주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	2005.04.01	2005.04.01	
대전	대전광역시보육조례	2007.10.05	2007.10.05	
울산	울산광역시보육조례	2007.10.09	2007.10.09	
경기	경기도보육지원조례	2005.06.13	2005.06.13	
강원	강원도보육조례	2006.12.29	2006.12.29	
충북	-	-	-	추진중
충남	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	2007.01.10	2007.01.10	
전북	전라북도영유아보육조례	2006.05.12	2006.05.12	
전남	-	-	-	추진중
경북	경상북도보육조례	2007.07.19	2007.07.19	
경남	-	-	-	추진중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2006.04.12	2006.04.12	